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4년 10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4년 10월 일

#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10월 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교섭단체 대표연설 실시를 위한 근거 마련 및 시간, 방법 등 필요사항을 신설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기한을 규정하기 위해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교섭단체 대표연설 근거 신설(안 제35조의2)
  - 발언시간 20분, 본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
- 전자회의록 공개기한 규정(안 제46조제5항)
  -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홈페이지 공개

## 3. 규칙안 :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규칙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4절에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교섭단체 대표연설)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(이하 “교섭단체 대표연설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본회의 개의일 3일 전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4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 중 전자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관 계 법 령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83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### 【지방자치법 시행령】

제56조(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)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### 【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】

제57조(회의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 ·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에서 따로 정한다.